

1. 제정이유

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·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,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, 미국·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.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20135호, 2024. 1.23. 공포)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항만장비(안 제2조)

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

나. 표준화 추진(안 제3조)

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,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, 표준 제정·개정·폐지 및 관련 조사·연구·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,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

다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(안 제4조)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

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

라. 전문기관의 지정 등(안 제5조)

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

마. 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(안 제6조)

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

바.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7조)

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, 정관의 변경 및 지도·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항만장비) 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항만법」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
2. 제1호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 작동시스템에 의하여 스스로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

제3조(표준화 추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(이하 “표준화 사업”이라 한다)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장비 등에 관계되는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화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법인·단체·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호에 따라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

을 제정·개정·폐지하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조사·연구·개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4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「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
2.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4.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

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제5조(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)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

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
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
3.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제6조(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)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
2. 융복합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
3. 공동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
4.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
제7조(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·감독 등)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, 정관의 변경 및 지도·감독 등에 대해서는 「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8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
사무소 소재지		사무소 전화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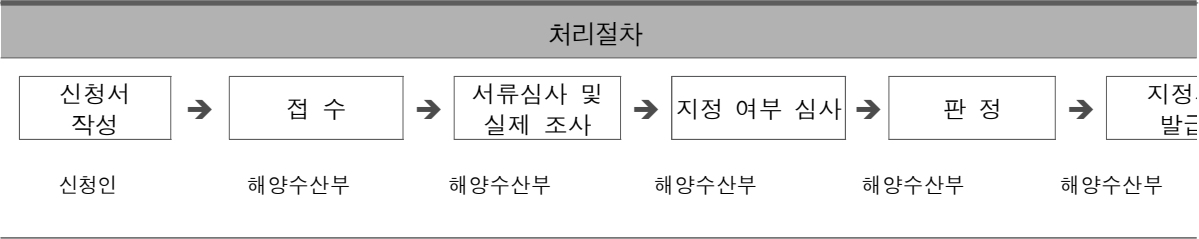
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1부 2.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1부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4.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사업자등록번호:

3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4. 대표자 주소:

5. 사무소 소재지:

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명		설립일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	전자우편
	주소				
	기관유형	[] 공공기관 [] 출연기관 [] 연구기관 [] 그 밖의 기관			

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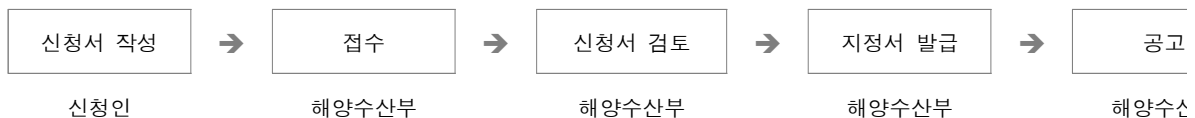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.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소:

위 기관을 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41